

의안번호	2216298
의 퇴 인	채현일의원
회 답 일	2026.4.7.
추계번호	26D0390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주민소환투표청구 요건을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인구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설정하고 주민소환투표 개표 기준을 완화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4억 1,3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16억 2,900만원(연평균 3억 2,6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평균
주민소환 청구 및 개표 기준 완화 (안 제7조 및 안 제22조)	413	381	388	—	447	1,629	326

주: 본 추계는 이전 주민소환 투표 및 개표 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주민 소환투표권)	주민소환 투표권자의 기준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함	의무규정

2	안 제7조(주민 소환투표의 청 구)	<안 제7조제1항>				의무규정
		구분	현행	개정안		
		시·도지사	시·도 주민소 환투표청구권 자 총수의 10 이상	기준 주민소 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명)	서명인 수(명)	
				5만 이하	기준 주민소환투표청 구권자 총수의 100분 의 15	
		시·군·구 청장	시·군·구 주 민소환투표청 구권자총수의 100분의 15 이상	5만 초과 10만 이하	7,500 + (기준 주민소 환투표청구권자 총수 중 5만을 넘는 수의 100분의 13)	
				10만 초과 50만 이하	14,000 + (기준 주민 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중 10만을 넘는 수의 100분의 11)	
				50만 초과 100만 이하	58,000 + (기준 주민 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중 50만을 넘는 수의 100분의 9)	
		지역구지 방의회의 원	당해 지방의 회의원 선거 구 안의 주 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 수의 100분 의 20 이상	100만 초과 500만 이하	103,000 + (기준 주 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중 100만을 넘는 수의 100분의 7)	
				500만 초과	383,000 + (기준 주 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중 500만을 넘는 수의 100분의 5)	
3	안 제9조(서명 요청 활동)	소환청구인대표자등은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서명요청 활동기간 동안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에게 전자소환청구인서명부에 전자서명 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				의무규정
4	안 제18조(주민 소환투표운동의 기간 및 주민소 환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주민소환투표운동기간은 주민소환투표일 전 13일부터 주민소환투 표일 전날까지로 함 * 현행법은 주민소환투표 공고일의 다음날부터 투표일 전일까지 소 환투표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주민소환투표일은 공고일부터 20일 이상 30일 이하의 범위 안에서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 도록 함				의무규정
5	안 제22조(주민 소환투표결과의 확정)	주민소환투표자의 수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 이상일 때 개표하도록 함 * 현행법은 3분의 1 이상일 때 개표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3조(주민소환투표권)	-	미대상: 18세 주민이 주민소환투표가 가능하더라도 18세 인구 비중이 19세 이상 대비 약 1% ¹⁾ 임을 고려하면 투·개표 관리, 선거공보물 등 관련 소요 예산의 증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2	안 제7조(주민소환투표의 청구)	○	
3	안 제9조(서명요청 활동)	×	전자서명 서비스 시스템 도입 및 적용 과정에서의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
4	안 제18조(주민소환투표운동의 기간 및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	-	미대상: 개정안에 따라 주민소환투표운동 기간이 단축될 것이 예상되며, 불법 주민소환투표운동 단속 경비 등 관련 소요 예산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5	안 제22조(주민소환투표결과의 확정)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로 함
- 본 추계에서는 개정안 시행에 따라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총 4건의 주민소환투표가 추가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가정함
 - 2020년~2025년까지 6년간 주민소환투표가 추진된 32건²⁾ 중 서명부가 제출된 건은 9건이고, 이 중 7건은 서명인 비율 미달로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되지 않음. 이 7건의 주민소환청구에 대하여 개정안의 내용에 따른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 수 요건을 적용하면 주민소환청구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2건임

1) 2024년 기준 18세 인구 441,107명, 19세 이상 인구 43,625,892명(자료: 통계청)

2) 소환청구인대표자가 대표자증명서를 교부받은 건을 기준으로 함

[표 2] 서명부 제출하였으나 미달된 경우의 주민소환 현황(2020~2025)

년도	지역	대상	청구권자 총수	개정안에 따른 필요 서명인수	주민소환 당시 제출된 서명인수	비고
2020	부산 부산진구	구청장	313,011		6,672	
2020	부산 부산진구	구청장	313,011	0.4%	1,340	
2020	부산 부산진구	구청장	313,011	1.5%	5,000	
2023	경북 상주	시장	83,639	11,874	10,885	
2023	전북 남원	시장	67,691	9,800	9,857	청구 가능
2025	서울 서대문구	의원	32,895	4,934	6,290	청구 가능
2025	전북 완주	군수	85,398	12,102	4,444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 또한, 개정안 제3조는 주민소환투표권 연령을 18세로 하향하고 있으며, 현행법 제7조는 주민소환투표청구 자격을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개정안³⁾은 그 자격을 주민소환투표 청구일을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안 시행 이후 서명인 수 요건을 충족하는 주민소환투표 청구 건수가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 매년 1건의 주민소환투표가 추가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가정
- 다만, 현행법 제8조⁴⁾는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와 임기만료일로부터 1년 미만일 때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 중 지방선거가 실시될 예정인 2030년을 제외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1회씩, 총 4회의 주민소환투표가 추가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가정

- 3) 개정안 제7조(주민소환투표의 청구) ① 주민소환투표 청구일 현재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주민소환투표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라 한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선거구시·도의회의원 및 비례대표선거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은 제외하며, 이하 “선출직 지방공직자”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지역선거구시·도의회의원(이하 “지역구시·도의원”이라 한다) 및 지역선거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이하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선거구를 말한다]의 제4항에 따라 산정한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이하 “기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라 한다)에 따라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명인 수 이상의 서명으로 그 소환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 4) 제8조(주민소환투표의 청구제한기간)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없다.
1.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2.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만료일로부터 1년 미만일 때
 3. 해당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한 날부터 1년 이내인 때

- 앞서 전제한 바와 같이 추계기간 동안 추가적으로 4건의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되었을 때 이 중 2건의 주민소환은 개표가 진행되는 것으로 가정
 - 주민소환 제도 시행 이후 투표가 실시된 건은 12건(2007년~2025년)인데 이 중 완화된 개표 기준(1/3 이상 투표→1/4 이상 투표)을 적용했을 때 추가적으로 개표가 이루어질 수 있는 3건을 포함한 개표가능건수는 5건(41.7%)으로, 이 비율을 고려하여 추계기간 중 추가로 실시되는 4건의 주민소환투표 중 2건이 개표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가정

[표 3] 주민소환투표 실시 현황

년도	지역	대상	투표율
2007	경기 하남	시장	31.1%
		시의원	23.8%
		시의원	37.6%
		시의원	37.6%
2009	제주	도지사	11.0%
2011	경기 과천	시장	17.8%
2012	강원 삼척	시장	25.9%
2013	전남 구례	군수	8.3%
2019	경북 포항	시의원	21.75%
		시의원	21.75%
2021	경기 과천	시장	21.7%
2025	강원 양양	군수	32.25%

주: 위 실시현황 중 주민소환투표에 따라 소환된 건은 2007년 시의원 2건이며, 개정안의 완화된 개표기준을 충족하는 건은 2007년 하남 시장, 2012년 삼척 시장, 2025년 양양 군수 등 3건임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실시되는 2건의 개표는 지방선거 다음해인 2027년과 2031년에 실시되는 것으로 가정
- 시·도지사의 경우 지금까지 주민소환 투표가 실시된 사례가 없던 점을 고려하여 투표 및 개표에 따른 비용은 시·군·자치구를 기준으로 산정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추가적으로 실시되는 주민소환 투표와 개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추계의 전제에 따라 주민소환 투표는 매년 1건씩 실시되고(2030년 제외), 이 중 개표는 2027년과 2031년에 각 1건씩 실시되는 것으로 가정
- 주민소환 투표에 소요되는 비용은 최근 사례를 준용하여 357백만원으로 가정하고 물가상승률을 적용함⁵⁾
 - 경북 포항 317백만원(2019년), 경기 과천 443백만원(2021년), 강원 양양 312백만원(2025년)의 평균비용 357백만원이 2025년에 발생한 것으로 가정하고 물가상승률을 적용
- 개표에 소요되는 비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산하는 개표 소요비용 중 투표인수가 10만 미만인 경우(38백만원⁶⁾)를 적용한 후 물가상승률을 적용
 - 기초 지자체별 평균 선거인 수인 약 19만명⁷⁾ 및 과거 주민소환투표를 중 최대치인 37.6%를 고려하였을 때, 투표인 수는 10만 미만일 가능성이 높음
- 추계 결과, 개정안에 따라 주민소환투표청구 요건을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인구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설정하고 주민소환투표 개표 기준을 완화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4억 1,3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16억 2,900만원으로 추계됨

5)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2026년 3월 기준, 단위: %)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소비자물가상승률	2.1	2.3	2.0	2.0	2.0	2.0

6) 개표 사무원 사례금, 개표소 설치비, 임차료 등 포함(2025년 기준)

7) 제8회 동시지방선거 선거인 수 44,303,449명(행정안전부 발표)을 기초 지자체 수 226개로 나누어 계산

[표 4]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주민소환 투표	373	381	388	—	404	1,546
주민소환 개표	40	—	—	—	43	83
합계	413	381	388	—	447	1,62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이전 주민소환 투표 및 개표 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전상욱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전상욱	02-6788-4673	flyhigh@assembly.go.kr